

	<b>개인형이동장치안전관리규정</b>	규정번호	3-1-29
		제정일자	2022.03.01.
		개정일자	2025.05.01.
		개정차수	4차
		소관부서	행정지원처

## 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의 교내에서 개인용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사고 발생 시 대학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며,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등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교내 도로에 적용한다.

제3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개인형 이동장치”란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19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.
2. “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(이하 “운전자” 라고 한다)”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사용하며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.
3. “도로”란 실질적으로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(車馬)가 통행할 수 있도록 개방된 장소를 말한다.

제4조(통행의 금지 및 제한) 대학 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, 교통의 안전과 보행자 등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(區間)에 대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.

제5조(대학의 의무) ① 학생·교직원 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내 모든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규정을 대학 현실에 맞게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교내 모든 도로에서 원활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(거치)구역, 충전시설 등 적절한 교통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, 이에 따른 교통안전 확보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제6조(안전관리책임자의 책무) 행정지원처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(이하 “안전관리책임자”라고 한다)가 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담당자(이하 “안전관리담당자”라고 한다) 지정
2.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

제7조(안전관리담당자의 책무) 행정지원처 시설안전팀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담당자(이하 “안전관리담당자”라고 한다)가 되고 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대학교 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.

## 제2장 등록 및 운행

제8조(개인형 이동장치의 등록 및 관리) 모든 운전자는 운행 전 개인형 이동장치를 [별지]서식에 의거 행정지원처 총무인사팀에 등록·신청한 후 운행하여야 한다.

제9조(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) ① 운전자는 도로의 우측 끝을 이용하여 통행하여야 한다.

- ② 운전자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보도나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와 차량

주차장에서 운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내려서 걸어야 한다.

③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.

④ 운전자는 교내 모든 건물 내에서 이동장치를 절대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.

제10조(속도 제한)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 통행 속도는 25km/h 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.

제11조(안전거리 확보 등) ①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차량, 개인형 이동장치, 자전거, 기타 이동장치(이하 “차량 등” 이라고 한다)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차량 등이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그 차량 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.

②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차량 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,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차량 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.

③ 운전자는 그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 등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④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12조(보행자의 보호) ①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내 도로에서 운행 시 항상 보행자에게 양보하여 운전하여야 하며, 보행자는 통행에 대한 우선권을 가진다.

②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.

③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 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### 제3장 충전 및 주차

제13조(충전의 장소 및 방법) ① 개인용 이동장치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충전하여야 하며, 건물 내부에서는 절대 충전을 해서는 아니된다.

② 개인형 이동장치 등을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.

③ 개인형 이동장치의 충전시 이용료를 운전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.

④ 화재 및 전기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학(행정지원처 총무인사팀)에 등록되지 않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충전할 수 없다.

제14조(주차 장소의 제공) 교내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. 다만, 주차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기 어려울 경우 자전거 보관장소등의 공간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.

제15조(주차의 금지)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주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교차로 및 횡단보도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

2.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

3.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2미터 이내인 곳

4. 장애인 경사로나 설치되어 있는 곳 또는 장애인의 접근이나 주차를 방해할 수 있는 곳

5. 건물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2미터 이내인 곳

6.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

가. 「소방기본법」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

나.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

7. 건물 입구 또는 건물에서 나가는 곳

8. 건축물, 구조물, 녹지공간 위
9. 도로, 보도, 테라스, 주차장, 자전거 전용도로 등 지정구역 이외의 장소
10. 경사로, 계단 또는 연석 등
11. 기타 대학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

제16조(주차위반에 대한 조치) ① 안전관리담당자는 제15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운전자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을 위반한 운전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경우, 개인형 이동장치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잠금 장치는 제거될 수 있으며, 대학은 견인으로 인하여 파손된 부분과 잠금장치의 수리 또는 교체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.

④ 제2항에 따라 주차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학에서 지정한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며, 그 사실을 운전자(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관리 위탁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)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⑤ 제4항의 경우 운전자의 성명, 주소 등 연락처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대학 홈페이지 게시 또는 전자문서(업무연락)등의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.

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게시 또는 안내를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고, 매각 대금은 대학회계로 세입조치 한다.

#### 제4장 운전자의 의무 및 안전교육

제17조(운전자의 의무) ①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,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, 도로의 교통상황과 장치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.

1. 술에 취한 상태(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.03퍼센트 이상)에서의 운전
2. 과로한 상태에서의 운전
3. 질병 또는 약물(마약,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
4.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운전

제18조(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) ①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.

1.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운행할 것
2. 포트홀, 움푹 패인 곳, 장애물, 공사장, 보행자, 기타 차량 운행 상태 등 주변 환경에 유의하여 운행할 것
3.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세워둔 채 시비·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
4. 운전자가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떠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, 다른 사람이 함

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

5.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

가. 이동장치를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

나.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

6. 운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

가. 정지하고 있는 경우

나.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

7. 운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할 때 헤드폰 또는 이와 유사한 귀마개 등을 착용하지 아니할 것

8. 운전자는 동승자를 태우거나 화물을 싣고 운행하지 아니할 것

9.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고, 손목보호대, 무릎보호대, 팔꿈치 보호대 등 기타 보호장치 착용을 고려할 것

10. 양손은 항상 핸들바에 올려놓고 절대 한손으로 운전하지 아니할 것

11. 운행 시 복장은 눈에 띄는 복장을 착용하고 되도록 야간에는 운행하지 말 것. 부득이하게 야간에 운행할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전조등, 후미등을 갖추고 각 면에 반사재료나 반사조명을 부착할 것

12. 그 밖에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·공고한 사항에 따를 것

② 관리부서는 제1항 각 호를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운전자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관리부서가 직접 위반사항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19조(운전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) ① 모든 대학 구성원(교수, 직원, 조교, 재학생)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(이하 “안전교육”이라 한다)을 수강하여야 한다.

② 안전교육의 방법은 동영상 활용을 통한 e-class 시스템 또는 집체교육 등의 방법으로 한다.

## 제5장 안전사고

제20조(현장지도) 안전관리책임자, 안전관리담당자, 시설관리자 및 경비담당자 등 대학의 시설 관리업무 담당자는 운전자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즉시 현장지도 및 제재 조치 할 수 있다.

제21조(위반 시 제재) ① 매학기 기준 대학 구성원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1회 위반 : 계도조치

2. 2회 위반 : 계도조치 및 부서(학과)에 통보

3. 3회 이상 위반 : 대학 내 6개월 탑승정지 통보

② 대학 구성원이 아닌 외부인이 규정을 위반하여 학교 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청에 위반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.

③ 이동장치 운전자 등이 대학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제22조(안전사고 발생 시의 조치) ① 교내 도로에서 개인형·공유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 관련자와 목격자 등은 사상자 구호와 현장보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 관련자와 목격자 등은 사고발생 장소 및 사상자

의 수, 부상정도, 재산 피해사항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대학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.

③ 대학 관리자는 안전사고 접수 시 사고관련자 또는 신고자에게 사고현장을 원형대로 보존토록 하고 안전사고 보고서 및 안전사고 진술서 등을 작성·제출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23조(안전사고의 조사) ① 대학 관리자는 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체 없이 조사를 하며, 필요한 경우 경찰서와 소방서 등에 신고한다.

② 현장 조사 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.

1. 사고발생일시
2. 사고발생장소
3. 피해상황(사망자수, 부상자수, 재산피해규모 등)
4. 사고발생경위
5. 신고자(소속, 성명, 연락처 등)
6. 사고당사자(소속, 성명, 연락처 등)

## 제6장 기 타

제24조(기타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2022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2023 년 5 월 8 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2024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2024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2025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